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9,233,383	9,877,001
일반회계	309,811,414	9,294,342
특별회계	19,421,969	582,659
기타특별회계	19,421,969	582,65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26,333	51,790
의료급여특별회계	834,870	25,046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511,828	15,355
주택사업특별회계	190,962	5,729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89,564	2,687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4,515,751	135,473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7,329,386	219,882
장흥담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673,203	80,196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27,993	45,84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2,079	66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26,36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